

보도자료

计引 医蜂桃 对故则于 吉州 圣外 子四 少许

보도 일시	2023. 1. 11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3. 1. 10.(화) 09:00
담당 부서	금융혁신기획단	책임자	과 장 신장수(02-2100-2620)
<총괄>	금융데이터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영진 (02-2100-2696)

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

-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·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. -

주요 내용

- □ '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합니다.
- □ 구체적 과금기준은 '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·검증, 정보 제공기관, 마이데이터 사업자,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 그룹 논의 등을 거쳐, '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.
 -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* 결과 보다 정확 하고,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**되었습니다.
 - *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~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비해,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일('22.1.5일)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로 분석
 - **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, '23년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
 -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, 경제·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.
- □ '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, '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.

'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 결과

[1] 원가분석 개요

Ι

- □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**정보**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.
 - (조사기관) 신용정보원, 회계법인(삼일 PwC)
 - **(조사대상)** 5,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실시
 - * 단, 전체 조사 대상 중 일정 수준 이상 **과대·과소** 작성·제출된 통계 이상치는 제거
 - (분석 대상 및 기간)
 - 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'20년 ~'22년에 걸쳐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·구축 비용을 조사·분석
 - 운영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간('22.1~9월) 발생한 직·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

[2] '22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

- □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**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***, **운영비는 연 921억원**으로, **총 원가는 1,293억원 수준**으로 나타났습니다.
 - * 총 시스템 구축비는 1,860억원이며,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 \rightarrow 연 372억원 산정
- □ 또한,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.

(3) '23년 추가 원가분석 필요성

- □ (원가분석 데이터 부족) 정확하고,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 - o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였고.
 - **카드 가맹점 수수료**는 3~5년 간의 자료*를 기반으로 **적격비용**을 **산정** 하고 있는 바
 - *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
 -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('22.1~9월)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습니다.
 - 참고로, 국내 공공분야 수수료 사례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도입,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.
 - * (사례)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수수료의 경우 '02년 원가분석 수행 후 3년간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을 거쳐 '05년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도입, 단계적 인상 추진중
- □ (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) 한편, '23년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*가 금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= ① 전송시스템 구축·운영비 ÷ ② 연간 데이터 호출량
 - ① (정보제공 범위 확대) '23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순차 확대(기존 492개 → 720개 항목)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·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② (데이터 호출량 변동) '23년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'22년과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하여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,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.
 - ⇒ 따라서, **정확한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** 등 **구체적 과금기준 수립**을 위해 **'23년 추가적인 분석·검증이 요구**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피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

[1] '23년 과금 시행 및 추가 검증

- ① (과금 시행) 예정대로 '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겠습니다.
- ② (추가 분석·검증) 다만, 구체적 과금기준은 '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·검증*, 정보제공기관, 마이데이터 사업자,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'23년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입니다.
 - *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 수집 → 금감원·신용정보원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과금 연구용역 실시
 -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, 경제·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.
 - 아울러, **합리적 과금**이 이루어 수 있도록 **정기적 전송*의 구분 기준과** 의미를 명확히**할 것입니다.
 - *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 최신성·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함
 - ** 현재 신용정보법은 '정기적 전송'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'정기적 전송'에 대해 과금 할 수 있다고만 규정 →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
- ③ (사후 분할 납부) '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 되어, '24년부터 납부될 예정입니다.
 -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**분할 납부*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 - * (예시) '24년도 1월 과금액 정산 시 '23년도 1월 과금액을 포함하여 납부(12개월 분납)

(2) 주기적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

□ '24년 이후,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**주기적**으로 **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Ⅲ 향후계획

- □ ('23.1월~)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* 구성·운영
 * 금융위, 금감원, 신정원, 금보원, 금융연, 정보제공기관,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참여
 □ ('23.1~10월)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 수집
 □ ('23.7~11월) 금감원·신정원·금융연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
- □ ('23.12월)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 발표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장수	(02-2100-2620)
<총괄>	금융데이터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영진	(02-2100-2696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실 장	김충진	(02-3145-7160)
	금융데이터실	담당자	팀 장	이영기	(02-3145-7180)
<공동>	한국신용정보원	책임자	센터장	이철흠	(02-3705-5433)
	빅데이터센터	담당자	팀 장	성시호	(02-3705-5764)
<공동>	금융보안원	책임자	센터장	오중효	(02-3495-9900)
	데이터혁신센터	담당자	팀 장	유재필	(02-3495-9950)
<공동>	금융결제원	책임자	부 장	유한상	(02-531-1800)
	디지털금융부	담당자	팀 장	김정훈	(02-531-1805)
<공동>	코스콤	책임자	부 장	정홍배	(02-767-7601)
	마이데이터중계센터부	담당자	팀 장	김흥재	(02-767-7620)
<공동>	전국은행연합회	책임자	부 장	김수연	(02-3705-5326)
	디지털혁신부	담당자	팀 장	박민기	(02-3705-5718)
<공동>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	이용준	(02-2262-6518)
	미래전략부	담당자	팀 장	이훈	(02-2262-6636)
<공동>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부 장	홍군화	(02-3702-8640)
	혁신사업지원부	담당자	팀 장	곽수경	(02-3702-9741)
<공동>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부 장	박상철	(02-2003-9190)
	산업총괄부	담당자	차 장	임희정	(02-2003-9192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부 장	윤형식	(02-2011-0727)
	디지털제도부	담당자	팀 장	임재현	(02-2011-0729)
<공동>	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	책임자	본부장	진기화	(02-580-0550)
	통신사업본부	담당자	팀 장	김충현	(02-580-0551)
<공동>	핀테크산업협회	책임자	사무처장	장성원	(02-587-2663)
	사무처	담당자	팀 장	허준범	(02-6949-2683)
<공동>	한국인터넷기업협회	책임자	정책실장	권세화	(02-563-4608)
	정책2실	담당자	주임연구원	황혜주	(02-563-4651)
<공동>	한국대부금융협회	책임자	부 장	심용식	(02-6710-0810)
	기획부	담당자	과 장	최정열	(02-6710-0816)

<공동>	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	책임자	사무차장	한성택	(02-761-2781)
	사무국	담당자	과 장	김병하	(02-761-2782)
<공동>	한국온라인쇼핑협회	책임자	실 장	하명진	(02-784-4114)
	정책지원실	담당자	팀 장	박상현	(02-784-4114)



